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73호
2. 발 의 자 : 여 명 의원
3. 발의일자 : 2020. 2. 5.
4. 회부일자 : 2020. 2. 12.

II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 없음.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20. 2. .~ 2.):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여 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73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관련하여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제출, 심사기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교육정책 체험과 우수 교육사례 발굴이라는 공무국외여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같은 사업은 외국의 선진 교육정책을 경험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다양한 국외연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붙임〕 참고).
- 그러나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었고, 국외연수 계획수

립과 결과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체험과 탐구보다는 유명 관광지 방문 등의 외유성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바 있습니다.¹⁾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내실화하여 외유성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검토(안 제4조의2)

- 먼저 안 제4조의2는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심사대상인 여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한 것으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결과, 이에 대한 공개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5조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여행 목적과 여행동기, 여행기관 등의 여행개요와 여행일정, 여행경비, 여행효과와 외교부 협조(재외공관 협조 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 준비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가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의 사전 자문·협의·조정 과정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공무국외여행의

1) 2019년 학교공간혁신 국외연수단(단장 김원찬 부교육감)의 국외연수의 경우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학교공간 구성과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보고 교육청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어떻게 이를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8일간 공식 일정 중 학교공간혁신과 관련된 학교방문은 단 2곳뿐이었고 이 또한 1시간정도의 짧은 방문에 그치는 등 일정의 대부분이 성당, 궁전, 광장 등 유명 관광지 여행 위주로 계획되었음.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4조제2항제1호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4조의2의 조명이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4조의2의 조명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재와 같이 7명으로 유지하면서 임명직 1명을(기획조정실장)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을 모두 위촉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같이 9명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내부 관련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무국외여행은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위원의 비율을 원안보다 상향하여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조정하여 균형 있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심사위원회 구성 권한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식 및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구성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 수) 총 7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 구성)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은 3명
 - (본청 내부위원) 당연직 직위로 지정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은 감사관, 교육혁신과장으로 함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각 기관(학교)장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 원 장	권 성 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2	부위원장	이 길 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장)	"
3	위 원	이 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4	위 원	이 종 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
5	위 원	신 문 철	외부위원	위촉직
6	위 원	박 현 속	외부위원	"
7	위 원	최 창 우	외부위원	"

※ 위원 임기: 2019. 1. 19. ~ 2021. 1. 18.(2년)

○ 그러나 현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는 퇴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²⁾ 회의 참석률도 저조하여 대부분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임명직과 위촉직의 구성비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부재로 인한 서면심사의 남발 우려 및 교육청의 제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³⁾

2)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에는 퇴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6조는 당연직 위원을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부서의 장’ 등의 4명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8조에서도 임명직 위원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감사·예산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공무국외

○ 다음으로 현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직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교육장, 소속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그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가 각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역시 교육장에게 위임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2020년도 국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내역(본청, 직속기관)

연 번	부서명	사업내역	사업 연속성 여부	참가규모및대상	2020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편성액 (단위:천원)		
1	감사관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국외연수	신규	감사관 1명	5,000,000원*1명=	5,000		
2		청렴도 우수국가 국외연수	신규	청렴업무담당자 10명	2,000,000원*10명=	20,000		
3	총무과	함께하는 테마연수	지속	연수단 70명	3,000,000원*70명=	210,000		
4		자기주도적 기획연수	지속	연수단 43명	1,500,000원*43명=	64,500		
5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 당관	지방교육재정담 당자	지속	지방교육재정업무 담당자3명	4,300,000원*3명=	12,900	
6			해외선진사례탐 방	행정관 리담당 관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지속	담당자 3명	4,000,000원*3명*1회=
7		참여협 력담당 관	글로벌역량강화 아카데미	지속	(2019) 교장, 교감 등 19명	75,000,000원*1회=	75,000	
8			해외서울교육봉 사단	지속	(2019) 교사 등 19명	65,000,000원*1회=	65,000	
9			서울교육글로벌 나눔사업	지속	(2019) 담당자 3명	10,000,000원*1식=	10,000	
10		노사협 력담당 관	교원노사관계사 례	지속	교직단체교섭업무 담당자2명	4,500,000원*2명=	9,000	
11			공무원노사사례 연구과정국외연 수	지속	공무원단체교섭업무 담당자2명	5,000,000원*2명=	10,000	
12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담당자 국외연수	신규	교육공무직원교섭업무 담당자3명	5,000,000원*3명=	15,000	
13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사합동 국외연수	신규	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 노사유공자(노조)2명	5,000,000원*2명=	10,000	
14		교육 정책 국	교육혁 신과	외부위탁용역 (우수수업나눔)	지속	0주최:교육부(2020) 0주관:대전교육청(2020) 0규모:(2019)33명 0교육부담당자(2명)및16 개 시도교육청자유학기 업무담당자(31명,2019)	5,000,000원*1식=	5,000

15		메이커페어선진 문화체험국외연 수	지속	(2019)교원6명, 학생6 명, 교육전문직6명	50,000,000원*1회=	50,000
16		민간생태전환협 력사업	지속	생태환경교육 유공교 원, 교육전문직 20명	심사수당(40,000원+10,000 원)*10명*3회 위탁비용2,100,000원*20명 각종수수료1,000,000원*1회 일반수용비500,000원*2회 업무추진비20,000원*10명*3 회	46,100
17	유아교 육과	원장자격연수 국외연수	지속	45명	5,320,000원*45명=	239,400
18	초등교 육과	공립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국외연수	지속	105명	3,160,000원*105명=	331,800
19		서울교육연구년 제	지속	15명	2,500,000원*15명=	37,500
20		교육과정담당자(초) 국외연수	지속	1명	4,000,000원*1명=	4,000
21		교실혁신 사례탐구국외연 수	신규	20명	4,000,000원*20명=	80,000
22	중등교 육과	중등교장자격연 수 국외연수	지속	중등교장 170명	5,320,000원*170명=	904,400
23		서울교육연구년 제	지속	교원 15명	2,500,000원*15명=	37,500
24		교육과정담당자(중,고) 국외연수	지속	2명(시도교육청 중,고 교육과정 담당자)	4,000천원*2명=	8,000
25		교장역할역량강 화연수 (현장지원형학교 장해외체험국외 연수)	지속	학교장 15명	5,000,000원*15명=	75,000
26		문화협정에의한 제2외국어교원 국외연수	지속	제2외국어 교사 20명	750,000원*20명= (항공료및사전연수등)	15,000
27		학생평가혁신을 위한 해외심화연수 위탁교육비	지속	전문직2명 교사8명	4,400,000원*10명= (항공료및사전연수등)	44,000
28	민주시 민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및	지속	특수교사 25명	4,500,000원*25명=	112,500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현장 연수				
29	생활교육과		한중언어-문화체험단운영	신규	학생(일반/다문화) 70명	80,000,000원*1식=	80,000
30	진로직업교육과		미래신기술 연계 진로교육 혁신연수	지속	담당자 1명	5,000,000원*1명=	5,000
31			남방초청국가 방문 국외출장	지속	·국제화교육사업단 현장방문 담당자 4명(또는 2명) ·남방초청국가 담당자5명	·3,500,000원*8명(3회)= ·4,000,000원*5명=	48,000
32			교육환경보호제도 담당 국외연수	신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1명	2,000,000원*1명=	2,000
33			학교예술교육활성화연수(국외)	기존	시도교육청별 2인 이내	5,000,000*2명=	10,000
34	교육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해외연수	지속	교육청업무담당자 1명	2,000,000원*1명	2,000
35		학교지원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시도교육청학생 배치업무담당자 연수참가경비	지속	교육청업무담당자 3명	2,000,000원*3명	6,000
36			국외 선진사학기관 탐방 통합위탁계약비	변경	사학기관우수직원20명 내외	2,000,000원*20명	40,000
37		교육시설안전과	선진재난안전시설 및 우수시설조사연구	지속	5명,교육(지원)청 내진업무담당자	2,000,000원*5명=	10,000
38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국외학술교류	지속	10명(정책연구소 교육전문직 및 선임연구원)	2,000,000원*5명*2회=	20,000
39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	교육연수원장 역량 강화	지속	원장 1명	5,000,000원*1회=	5,000